

제 8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제 8.1 조 목 적

이 장은 다음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WTO TBT 협정”)의 완전한 이행
- 나. 각 당사국의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및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증진. 그리고
- 다. 사업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 환경의 조성 및 개선

제 8.2 조 적용범위 및 방식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및/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의 평가에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은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및/또는 제조업자나 제조공정의 평가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한 문제 또는 분야에 적절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방안들에는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정,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문제에 관한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가. 소정의 규정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 나.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 다.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 라.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 마.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하는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수용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강화한다. 그러한 약정은 분야별 부속서에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4. WTO TBT 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 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양 당사국은 당해 국제표준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위한 기초로서 당해 국제표준 또는 그러한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그러한 표준의 관련 부분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인이나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와 같은 이유로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에 대한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TO TBT 협정의 제2조·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국제표준·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G/TBT/1/Rev.8, 23 May 2002)의 제9절(WTO TBT 협정 제2조·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지침 및 권고의 개발을 위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개정에서 규정된 원칙을 적용한다.

6. 이 장은 이 협정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3 조 정 의

1. 이 장의 목적상, 이 장에서 사용된 표준 및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일반적인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SO/IEC”)가 발간한 ISO/IEC 가이드 2:2004,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용어” 및 ISO/IEC 17000:2004,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포함된 정의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2. 그 밖에 다음의 용어 및 정의는, 소정의 분야별 부속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및 그 분야별 부속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수용한다라 함은 승인·허가·등록 및 적합성평가의 시장출하 후 평가와 같은 규제행위의 기초로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사용함을 말한다.

수용은 수용한다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인증기관이라 함은 관련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자국 또는 타방 당사국의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의 준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도록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상품 또는 품질제도 인증기관을 포함한다.

확인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른, 제조 또는 시험 시설의 확인기준 준수에 대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확인을 말한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의무적 이행요구 사항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일방 당사국의 당국을 말한다.

적합성평가라 함은 상품·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이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정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의 전형적인 예는 표본추출·시험·검사·평가·검정·인증·등록·인정 및 승인, 또는 그 조합이다.

적합성평가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정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소정의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한다라 함은 자국의 관할 범위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감독하고 그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방 당사국 영역 안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을 말한다.

상호인정이라 함은 각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이 자국에 상호주의적 대우를 부여한다는 기초 하에,

- 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장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상품 및/또는 제조업자/제조공정이 일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시험 결과를 수락하는 것, 즉 시험 결과의 상호인정을 말한다. 또는,
- 나.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장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상품 및/또는 제조업자/제조공정이 일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인증을 수락하는 것, 즉 적합성평가 인증의 상호인정을 말한다.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라 함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CAB를 말한다.

규제당국이라 함은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상품의 수입, 일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이용 또는 공급을 통제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상품의 제조업자/제조공정의 평가를 포함한 그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분야별 부속서라 함은 특정의 상품 분야와 관련한 이행 약정을 명시한, 이 장의 부속서를 말한다.

규정상 요건이라 함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기준을 말한다.

기술규정이라 함은 WTO TBT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시험시설이라 함은 독립적인 실험실,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시설, 또는 정부 시험기관을 포함하여, 일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도록 이 장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검증이라 함은 적합성평가기관이나 제조 또는 시험시설이 지정에 관하여 규정한 요건 또는 확인기준을 각각 준수하는 것을 감사 또는 검사의 방법으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적절한 경우, 단수는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 8.4 조 원 산 지

이 장은 분야별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일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양 당사국 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또는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과정의 평가에 적용된다.

제 8.5 조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적용범위

1. 이 조는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 가. 양 당사국이 자국의 정당한 목적 및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및/또는 제조공정의 평가
- 나.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기관 및 적합성평가절차

2. 이 조의 목적상, 분야별 부속서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적용 범위 및 대상에 관한 규정
 - 나.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즉, 적용 범위 및 대상에 관련된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 다. 이 조가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적합성평가절차 및 이 조가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이나 제조 또는 시험시설의 확인에 관한 규정상 요건 또는 기준. 그리고
 - 라. 지정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의 명단

의무

3.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당해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적합성 인증서와 마크를 포함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한다.

4. 대한민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상품이 대한민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5. 싱가포르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의 지정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상품이 싱가포르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지정당국

6. 이 조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 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품 또는 수출품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 당사국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단일의 지정

당국을 지정한다.

- 나. 그러한 지정 및 그에 따르는 변경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 다. 자국의 지정당국과 관련된 예정된 변경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 그리고

- 라. 다음을 보장한다.

- (1) 자국의 지정당국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감독(검증을 포함한다)하고, 그 지정의 철회, 그 지정의 정지, 및 그 지정의 정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 (2) 자국의 지정당국은, 공정을 포함한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신뢰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련 상대기관과 협의한다. 협의는 그러한 참여가 적절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 비용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그 밖의 평가에 관련된 감사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7. 다음의 절차를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에 적용한다.

- 가. 각 당사국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자국의 제안을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TBT 공동위원회("TBT 공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당국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조에 따라 등록되도록 제안한다.
- 나. 타방 당사국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상의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가호에 규정된 제안의 수령일부터 90일 내에 예상등록일과 함께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에 관한 타방 당사국의 입장을 제안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그러한 검토를 함에 있어 그러한 타방 당사국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앞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TBT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당사국의 입장을 접수한 후 90일 내에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당사국의 지정당국은 TBT 공동위원회 결정의 접수일부터 7일 내에 제

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일자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 한다.

다. TBT 공동위원회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TBT 공동위원회는 지정당사국과 공동 검증을 수행 할 것을 결정하거나 제안된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안 당사국이 그 기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검증이 종료된 후, TBT 공동위원회는 그 제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8. 지정당사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제안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가 최신의 것이 되도록 유지한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적합성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지정된 상품 또는 공정
다.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도록 지정된 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
라.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을 위한 규정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정절차 및 필요한 정보

9. 자국의 지정당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이 더 이상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 당사국의 규정상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지정 당사국에 의하여 등록된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철회하는 것을 보장한다. 지정의 철회는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말소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말소일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철회 통보 접수일로 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 당사국의 규정상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말소를 제안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말소의 제안은 TBT 공동위원회 및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양 당사국이 접수한 때부터 말소된다.

11. 신규 적합성평가기관을 등록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그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등록일부터 수용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타방 당사국은 제18항 및 제19항을 침해함이 없이

그 적합성평가기관이 등록 말소 전에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1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예정된 변경사항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13.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분야별로 일반 대중에게 알린다.

적합성평가기관의 검증 및 감독

14.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지정당국은 감사·검사 또는 감독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규정상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증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상 요건을 적용하는 때에는 일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은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한 당해 기관의 이해 및 관련 경험을 고려한다.

나. 자국의 지정당국이 일방 당사국이 지정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상품의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표준 및 /또는 명세사항에 대하여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검증한다. 이는 요구받은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및 비정부 간 상호인정합의와 같은 그 밖의 비교검토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다. 자국의 지정당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이 지정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기술적 역량이 있고 규정상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인정제도와 같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15. 당사국은 의문이 있는 경우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규정된 타방 당사국의 지정을 위한 규정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또는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6.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검

증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절차에 자신의 경비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7. 각 당사국은 자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과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및 정지 해지

18. 당사국이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정지시킨 경우, 당사국은 그 정지를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정지된다. 타방 당사국은 그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 정지 이전에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19.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의 정지를 해지하는 경우, 당사국은 정지의 취지를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정지의 해지는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타방 당사국은 그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등록 정지 해지일부터 수용한다.

이의제기

20. 각 당사국은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적 역량 및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관련 규정상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의 분석 및/또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때에만 행사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권리를 행사한다.

21. 당사국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되는 이의제기 전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긴박한 상황의 경우, 이의제기의 권리가 행사된 후 즉시 협의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는 20일 내에 또는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를 달성하

지 못한 경우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TBT 공동위원회가 소집된다.

22. TBT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 지정당사국은 그 기술적 역량 또는 적합성에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까지 지정의 해당 범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정지한다.

가. 이의를 제기한 당사국이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역량 및 적합성에 대하여 만족하는 때, 또는

나.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이 철회된 때

23. 분야별 부속서는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검증 및 시한과 같은 추가적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이는 TBT 공동위원회의 활동개시를 포함할 수 있다. TBT 공동위원회가 공동 검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한 지정당국의 참여와 그 적합성평가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동검증을 적시에 수행한다. 그러한 공동검증의 결과는 20일 또는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시한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BT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24.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정지일 또는 철회일 이전에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의 목적상 수용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 8.6 조

비밀유지

1.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 역량 및 관련 규정상의 요건 준수를 타방 당사국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당사국에게 비공개 독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합성평가절차 및/또는 지정 활동과 관련하여 자국에 공개된 독점적 정보의 비밀성을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할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경우
- 나. 자국의 국내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다. 개인 사생활 또는 금융기관의 개별 고객의 재정 상황 및 계좌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에 반하는 경우
- 라.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 마.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 8.7 조 TBT 공동위원회

- 1. TBT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설치되며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책임진다.
- 2. TBT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장이 주도한다. 공동의장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최초의 접촉선이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의장을 통하여,
 - 가. 양 당사국은 정보의 교환을 확대한다.
 - 나. 양 당사국은 WTO상의 의무에 따라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변경을 통보한다.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은 서면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정보에 관한 서면요청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체함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무료로 또는 합리적 비용으로 인쇄물 또는 전자적 형태로 회신한다.
- 3. TBT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 4. TBT 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채택한다. TBT 공동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양 당사국의 공동의장의 주재 하에 소집된다.

5. 공동위원회는,

- 가. 다음을 포함하여 이 장 및 적용 가능한 가능한 분야별 부속서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관리하고 촉진하는 책임을 진다.
- (1) 신규 분야별 부속서의 추가 또는 기존의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범위 증대와 같은 이 장의 확대의 촉진
 - (2) 이 장 및 적용 가능한 분야별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문점 또는 분쟁의 해결
 - (3) 제8.5조에 규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의 정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정지의 취소,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결정
 - (4) TBT 공동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야별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목록의 유지
 - (5) 이 장에 규정된 정보교환의 적절한 방식 수립
 - (6) 제8.5조제16항에 규정된 공동 검증을 위한 각 당사국 전문가의 임명
 - (7) 이 장에 규정된 그러한 기능의 수행. 그리고
 - (8) 적절한 경우, 상호 관심사인 기술적 문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및 메커니즘의 개발
- 나. 자체 운영 절차를 결정한다.

6. TBT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최종적으로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최종 수단으로 한다.

7. TBT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장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8. TBT 공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각 당사국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된다.

9. 각 당사국은 TBT 공동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적용 가능한 대로 이행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2. 이 장은,

- 가. 당사국이 자국의 국제적 권리 및 의무에 따라 특정 국내 상황에 적절하도록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나.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수입품의 품질을 보장하거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거나 기만적 관행을 금지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다. 상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언제나 당사국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는 시장으로부터의 상품 회수, 시장유통 금지, 자유로운 이동 제한, 상품의 리콜 실시, 법적절차 개시 또는 수입의 금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러한 문제의 재발을 달리 방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내에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 라.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 또는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마. 당사국간의 명시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 및/또는 제조업자 또는 상품제조공정의 평가 그리고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바. 일방 당사국의 WTO TBT 협정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9 조 적용영역

이 장은 대한민국의 영역 및 싱가포르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 8.10 조
언 어

1. TBT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 간의 연락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의 서면 연락은 영어로 한다.
2. 당사국은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정보 또는 이장 및 그 분야별 부속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증서·증거서류와 같은 서류를 영어로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3. TBT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영어로 진행한다.
4.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 및 기록은 영어로 작성한다.

제 8.11 조
분야별 부속서

1. 당사국은 이 장에 대한 이행 협정을 규정하는 분야별 부속서를 적절하게 체결한다.
2. 양 당사국은,
 - 가.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조항 또는 부속서를 상대방에게 명시하여 전달한다.
 - 나.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다.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예정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상대국에게 통보한다.
 - 라. 자국의 지정당국 및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예정된 변경을 상대국에게 통보한다.
3. 분야별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그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교환각서를 교환한 날부터 둘째 달

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4. 당사국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6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 통지함으로써 분야별 부속서 전부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당사국은 6월의 통보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적합성평가결과를 계속하여 수용한다.

5. 당사국에게 안전·건강·소비자 또는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분야별 부속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당사국은 긴급한 문제의 성격·적용되는 상품 및 정지의 목적 및 논리를 즉시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6. 당사국이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품범위에 적합성평가에 관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그 분야별 부속서는 이러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적합성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다.

7. 분야별 부속서의 규정과 이 장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분야별 부속서의 규정이 우선한다.